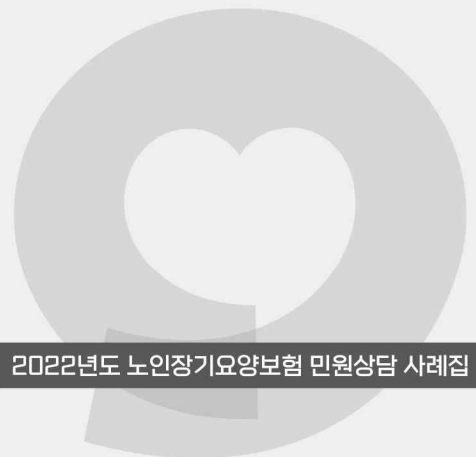


PART 09

**장기요양기관
현지조사**



01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? 변경

-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,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,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, 조사실시,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·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02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?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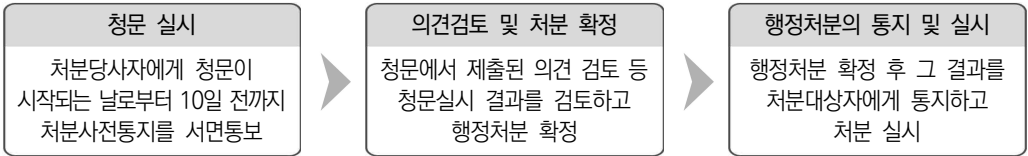
-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 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, 조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합니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조사 대상기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.
- 조사대상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및 수급자(가족)을 포함하여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자를 비롯한 불법·부당행위 관련기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조사내용은, 장기요양기관의 시설, 인력 및 수급자 현황,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·관리 여부,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,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.

03 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?

- 부당이득금 징수
 - 주체: 국민건강보험공단
 - 법적근거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(부당이득의 징수)
 - 부당이득금은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
- 해당기관이 휴·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,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
- 행정처분
 - 주체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 - 법적근거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5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)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[별표2] ‘행정처분의 기준’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[별표2] ‘과징금 부과 기준’
 - ‘장기요양기관’과 ‘장기요양기관 종사자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

구분	행정처분의 종류
장기요양기관	경고, 업무정지(6개월 범위 내), 지정취소
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	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(6개월, 12개월)

- 행정처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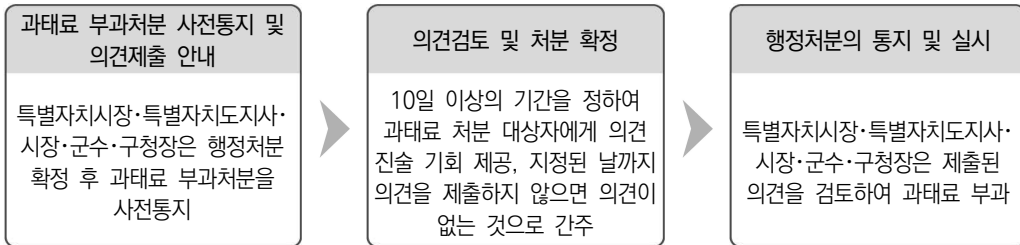


- 과태료 부과처분
 - 주체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 - 과태료 부과 기준
 -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 29조[별표 3] ‘과태료 부과기준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(기관기호) 단위별·각 위반행위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
 - ※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을 부과

•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에 구분

※ 위반행위 발생일: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

-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



04 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고 있나요?

-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을 전산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.
- 다만, 해당기관이 휴·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고, 체납 시에는 국제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.

•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환수의견 제출(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)
 • 환수결정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서 제출(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)

05 급여비용 청구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나요?

-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와 관련하여 판례(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48)는 ‘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의 자료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’고 하여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자의 고의·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대상이 됩니다.

06 현지조사를 거부·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? **변경**

- 장기요양기관이나 관계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1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현지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(업무정지 및 지급보류)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.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9조 제1항제7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, 2차 위반 시 3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법 시행규칙 제29조(행정처분의 기준)에 따라 1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, 2차에 걸쳐 위반 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되며 공단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습니다.

07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·감경하는 경우도 처벌하나요? 변경

- 장기요양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반드시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 본인부담금: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, 재가급여는 15%
-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소개·유인·알선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67조(벌칙)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.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29조(행정처분의 기준)에 따라 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,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3차 위반 시 지정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08 부당청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? 변경

-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

•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,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

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, 사무국장, 사회복지사 중 1인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 중 1인,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(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)이 있어야 하나,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(명의도용)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음
• 방문요양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 1인, 사회복지사 1인, 요양보호사 15인이 있어야 하나,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(도용)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개설함

○ 허위청구

- 실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 없이 급여비용 청구
- 요양보호사(또는 수급자)가 병원 입원 또는 해외여행, 휴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
- 실제 120분 서비스 제공하고 240분 이상 제공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
- 복지용구를 실제 제공한 개수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

○ 수가 가·감산기준 위반청구

- 입소시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,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
-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및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으나,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감산적용 없이 급여비용 청구
- 종사자가 실제 월기준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
-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추가가산을 청구하거나, 감산사유(인력허위등록, 정원초과 등)가 있음에도 추가 가산비용을 청구

○ 산정기준 위반청구

- 미인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2인 이상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
- 방문목욕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미이용 수가가 아닌 차량이용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
-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자를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24시간 이상 보호한 후 급여비용 청구
- 노인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만 가능한 3등급 수급자를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보호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